

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5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11월 6일
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박춘희, 김성기, 김광성의원

1. 제안이유

제7조(우대)와 관련하여,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며,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우대대상 및 감면범위 구체화(안 제7조)

나. 우대항목 추가신설(안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10. 16. ~ 10. 24.(의회사무과-4447), 의견없음.

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**보건의료원**”을 “「**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**」 제11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**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**」 제14조에 따른 이용료
3. 「**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**」 제14조에 따른 관람료
4. 「**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**」 제4조에 따른 관람료
5. 「**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**」 제4조에 따른 이용료
6. 「**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**」 제6조에 따른 관람료
7. 「**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**」 제4조에 따른 이용료
8. 「**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**」 제7조에 따른 관람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**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**」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제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「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
②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Ⅱ(100분의 50감면)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우대)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보건의료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 (비급여는 제외)</u></p> <p>2. <u>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</u></p> <p>3. <u>군이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우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</u>」 제11조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2. 「<u>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</u>」 제14조에 따른 <u>이용료</u></p> <p>3. 「<u>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」 제14조에 따른 <u>관람료</u></p> <p>4. 「<u>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<u>관람료</u></p> <p>5. 「<u>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<u>이용료</u></p> <p>6. 「<u>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</u>」 제6조에 따른 <u>관람료</u></p> <p>7. 「<u>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</u></p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이용
료

8. 「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
영 조례」 제7조에 따른 관람
료

② (현행과 같음)

[관계법령]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